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8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9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0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2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5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6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8조(「어선법 시행규칙」의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0조(「예비군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1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3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4서식 제2면, 별지 제2호의5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6조(「초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7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8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9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0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1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2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3조(「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의 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4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환
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직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지방환경관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귀하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납인 직인

257mm×182mm[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시·도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귀하 수납인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① 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 위반일자		
④ 위반행위		
⑤ 납부금액		
⑥ 납부기한		
⑦ 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시·도지사 직인 수납인		

210mm×297mm [백상지 80g/m²]

[] 입원 · [] 격리 통지서 Hospitalization · Isolation/Quarantine Notice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Please make a check mark inside brackets([]) for the corresponding section.

인적정보 Personal inform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 Family name	이름 Given name	연 yyyy	월 mm	일 dd
통지사항 Details	입원 · 격리 사유 Reasons				
	입원 · 격리 기간 Duration				
	입원 · 격리 장소 Facility ☐ 의료기관 Medical institution ☐ 자택 Home ☐ 시설 Other facilities ()				
	입원 · 격리 주소 Address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This is to notify that the person identified above is subject to hospitalization or isolation/quarantine as per Articles 43 and 43-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violation of treatment or isolation/quarantine measures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KRW 10 million as per Article 79-3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dissatisfied or object to this notice, as stated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36, you may raise an objec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you received this notice. Even after raising an objection, regardless of raising the objection, within 90 days from when you are aware of the action take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within 180 days from the date of the action taken, you can make a request for administrative appeals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or, as st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you may file a lawsuit for cancellation with the administrative cour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location.

년 yyyy 월 mm 일 dd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Commissioner of KDCA, Mayor of City, Governor of Province,
or The head of Si/Gun/Gu

직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

문서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상 호 · 법 인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공 사 명		보수적용기준		☐ 실보수 ☐ 기준보수
구 분		보험요율	보수총액	산정기간	개산보험료
인상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구 분		⑪보험요율	⑫보수총액	⑬산정기간	⑭개산보험료
인상후	산 재 보 험		/1,000		. . . ~ . . .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0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000		
	계				
추가로 내야 할 개산보험료 총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년 월 일까지 납부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유의사항

1.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공단의 관할지역본부(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기할 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조 제6제3항제3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금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종 후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사(하)의 총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채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사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사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상호(명칭)		
납대표자성명		
부주소		
자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9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9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10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수납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상호(명칭)		
납대표자성명		
부주소		
자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수납인
귀하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상호(명칭)		
납대표자성명		
부주소		
자		
③위반일자		
④위반행위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인]		수납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담당자		전화번호	처리일자
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 제원 (諸元)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주요 치수)	
발견 장소			
공유수면관리청		관리번호	제 - 호
제거사유			
제거기한		년 월 일	까지

귀하가 소유(점유)한 선박 등이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를 년 월 일까지 제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 기한 안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방치선박등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직권으로 제거하고, 그에 드는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
 지

(공유수면관리청)

직인

작성 방법

1. 발견 장소는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제거사유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 관리·이용에의 지장유무 및 해상교통에의 지장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부분)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세입징수관 인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주관		취급

일금

위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세입징수관 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통지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유수면관리청)

세입징수관 인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영수증서

제호	년도 세입	납
장		
관		
항		
목		
세입징수관		
계좌		

일금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268mm×190mm(일반용지 50g/㎡(재활용품))

감정평가비용 납부고지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및 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명(법인의 명칭)				
주 소				
평 가 대 상 토 지	소재지		필지 수 및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금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직인				
구비서류: 감정평가비용 산출명세서 1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사업시행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 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매 수 대 상 토 지	소 재 지		면적(㎡)
	필 지 수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성 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매 수 대 상 토 지	소 재 지		면적(㎡)
	필 지 수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공항시설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처분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처분대상 자격증	
처분근거	근거 법령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담당자	소속 / 성명	
	연락처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 ○ 귀하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면적	m ²
	명령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직인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납 부 의 무 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비용부담내역				
사업 명칭				
비용부담 대상지				
기반시설 개요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납부 기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고 지 서 겹 영 수 증 서 (납 입 자)

발행번호				납기일			
회계연도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 계		소 관		관	항	목	
과 목				년 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
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
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조치명령서

제	호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대상 건축물	[] 허가 번호, []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의 용도
조치명령 내용	조치명령의 사유
	조치명령의 내용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내용

귀하가 소유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치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납기일자 통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사업등록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 월				
납기 내 금액					과징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 기)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세입징수관:

직인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용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시·군·구 통보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정비비용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이행 통보 및 설치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4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확인 통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보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사업명		
위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소	
설치비용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공사의 종류			
공사시행 구 간	부터 까지 (킬로미터)		
공사시행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공사시행 이 유			

「도로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의 시행을 명하니, 첨부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
유의사항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유지·관리 명령서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유지·관리 구 간	부터 까지 (킬로미터)		
유지·관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유지·관리 사 유			

「도로법」 제33조제1항·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의 유지·관리를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비용예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도로관리청 보관용)

관 리 번 호			
(법인·의·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평 가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첨부서류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납부자 보관용)

관 리 번 호			
(법인·의·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 소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평 가 대 상 토 지	소 재 지		
	필 지 수	면적(㎡)	
납 부 고 지 금 액			
납 부 기 한			

「도로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를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도로관리청 직인

첨부서류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

도로 비용 부담 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부담대상		위치	
부담금액			
기간			
이유			

「도로법」 제87조제1항·제8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설계도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용징수통지서

비용 납부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사유				
납부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동물보호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안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됩니다.
가.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다.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동물보호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 사 적 인 수납인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기 관 사 적 인 수납인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장 사 적 인 수납기 관 사 적 인 수납인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소 또는 소 재 지			
부 담 금 의 명 세				
대상시설명				
비용의 총액				
부 과 금 액				
부 과 기 준	*면제 시 면제 근거 명시			
납 부 방 법		납 부 기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귀하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출부과금 [] 조정 부과
[] 환 급 통지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 부과,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 조정 부과 [] 환 급				
계	부 과 금	미 수 부과금	[]조정 부과금 []환급금	[]조정부과 []환 급 결정일자	[]수 급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조정 부과 [] 환급)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통지번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제 호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공개 여부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제3항에 따라 소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사방지 지정을 해제할 면적	비고
			m ²	
변상금액(원)			납부기한	납부장소
합계금액	사업시행에 든 금액	사후관리에 든 금액		
			까지	
변상사유				

귀하의 년 월 일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사방사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직인

유의사항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사방지 해제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과징금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과징금영수필통지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보관용)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주소 (법인명)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주소 (법인명)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발 행 번 호		
납 부 자	성명 (대표자)	
	주소 (법인명)	
위 반 일 자		
위 반 행 위		
납 부 금 액		
납 부 기 한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직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납인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업체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 명세

대상 시설명		
비용의 총액	원	
부과금액	원	
부과기준	* 감면 시 감면근거 명시	
납부방법		납부기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9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 납부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table><tr><td>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td><td>수납인</td></tr><tr><td></td><td></td></tr></table>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table><tr><td>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d>수납인</td></tr><tr><td></td><td></td></tr></table>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납인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①발행번호						
② 납부자	성명 (대표자)					
	주소 (회사명)					
③위반일자						
④부과기준						
⑤납부금액						
⑥납부기한						
⑦납부장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table><tr><td>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td><td>수납인</td></tr><tr><td></td><td></td></tr></table>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수납인					

257mm×182mm[백상지 80g/㎡]

제 호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사용중지 []작업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9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 안전·보건기준 위반내용	
---------------------------------------	--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지 청) 장

직인

제 호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작업중지 범위	☐ 전면 ☐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작업중지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행정소송법」에 따라 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납부자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위반내역	위반일자
	위반행위
납부내역	발행번호
	납부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선박안전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테이너 안전 조치 비용납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중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 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 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제 호			
시 정 · 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중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 · 보완 사유			
⑩시정 · 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 · 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 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제 호			
출 항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중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출항정지 사유			
⑩출항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제 호			
항 해 정 지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중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항해정지 사유			
⑩항해정지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항해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항해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제 호			
시 정·보 완 명 령 서			
①선 박 명		②선 장 명	
③선 박 번 호		④국 적	
⑤총 톤 수		⑥선 중	
⑦입 항 일 자	년 월 일	⑧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시정·보완 사유			
⑩시정·보완 기간 및 해제조건			
⑪비 고	시정·보완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 기한)	금액(분할납부 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지원금(융자금) 회수 통지서

성명 (또는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 주소지)			
지급 금액		지급일	
회수 금액		납부 기일	
회수 사유			
납부 방법			
기타 사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

직인

출항정지명령서

제	호		
어선의 명칭		선 장 명	
어선번호		국 적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입항일자	년 월 일	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출항정지사유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비 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에 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자 고지일자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 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 인

170mm×105mm(전산용지)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상금 지급통지서

「예비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귀하가 손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보상금 결정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		보상기일	
	보상방법			
그 밖의 참고사항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국 방 부 장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수 납 기 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직인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행정기관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수납인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납 부 자	성명(대표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수 납 기 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수납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약사법」 제8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4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의 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
수납기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

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업체명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부담금 내역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합계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약사법」 제86조의2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인

포장재 · 제품의 제조 · 수입 · 판매 중단명령서

[illegibl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
호
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 재 활용 부 과 금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산 출 근 거

□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 부 번 호			
회 계 연 도		회 계	징수관 계좌 소 관
납 부 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입신고(수입승인)번호		품 목	
--------------	--	-----	--

납 기 내 납부기간	년 월 일		원
			원
			원
		납 기 내 금 액	원

납 기 후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납 기 후 금 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170mm×105mm(전산용지)

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폐기물부담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징수유예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자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기간 연장)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미납 여부
징수유예·분할납부 취소 금액 내용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분할납부기한)	금액(분할납부금액)	
취소 사유					
귀하에게 제 호(20 . . .)로 승인한 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

고지번호		회계연도		년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회계구분		축산발전기금		
관리기관		기금관리자(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고지 금액	대체초지조성비		원	
	지 체 금		원	
	합 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납부기한 연기	당 초	년 월 일		
	연 기	년 월 일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및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인

주: 1.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 경과 전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에게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수납기관: 납부기한이 경과한 것은 수납할 수 없고, 납부기한이 연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기 관 명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1. 매립시설의 종류:
2. 매립시설의 소재지:
3. 설치승인(허가)일:
4. 납부방법:
5. 납부기한: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제2쪽)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주 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		소관		관		항		목	
과목				년도 월					
납기 내 금액				징수금 산출근거					
가 산 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징수관:

직인

170mm×105mm(전산용지)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제28조제3항 · 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 제40조제2항 및 제41조
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부과 []정산부과 []환급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계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가산금	미 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재부과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	[]재부과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결정일자	[]수 납 []정산부과 []환 급 []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또는 반환) 사유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회계연도			납부고지서 원부(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⑦ 납기 후 금액					원									
기금출납명령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 영수필통지서(기금출납명령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⑦ 납기 후 금액					원									
()은행()지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회계연도			납부 고지서결영수증(납입자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 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 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⑦ 납기 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지점 ()우체국												영수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직인	

회계연도			납부서(수납은행보관용)				납부기한							
발행번호							고지일자							
① 납 입 자	성명·상호													
	납입자번호					② 국고계좌								
	주소													
③ 회계			소관			관			항			목		
④ 과목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년 분기분									
⑤ 산출근거														
⑥ 납기 전 금액					원									
⑦ 납기 후 금액					원									
()은행()지점 ()우체국 ()출납공무원												영수인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부과기간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부과금액	⑧ 분할납부금액	⑨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신청내역				
⑩ 분할 횟수	⑪ 납부기한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⑬ 이자금액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1차				
2차				
3차				
합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조정부과(또는 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조정부과(또는 환급) 내역

- 부담금:
- 조정부과(또는 환급) 금액:
- 조정부과(또는 환급) 결정일:
- 수납(또는 환급)은행 및 계좌번호:
- 조정부과(또는 환급) 사유:
-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성명(대표자)	
납부 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8조 및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과징금 납부통지서(행정관청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성명(대표자)	
납부 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	
수납인	

과징금 납부통지서(납부자 보관용)

① 발 행 번 호	
② 성명(대표자)	
납부 자	주소(회사명)
③ 위 반 일	
④ 위 반 행 위	
⑤ 납 부 금 액	
⑥ 납 부 기 한	. . .
⑦ 납 부 장 소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수납인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²)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귀하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용)

유의사항

1. 납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됩니다.
2. 환경개선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납부담금이 적혀 있는 납부의무자는 미납부담금을 우선 납부해야 합니다.
3.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환경개선부담금은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한 직접납부와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대당(臺當) 기본 부과금액 × 자동차의 오염 유발계수 × 차령계수(車齡係數) × 지역계수
7.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8.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되므로 환경개선 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납기 마감일 7일 전까지 일시납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부과내역
산출근거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납부자		실명번호	
주 소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년 월 일	
	원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

년 월 일



안내 말씀
◆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 (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 회계 :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납부자 : 실명번호 :

금융기관	징수관 계좌	세 목 ()	납기내	납기후
			년 월 일	
			원	
합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기후 수납불가

담당자 :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



수납인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 목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급 통지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조정부과/환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계	부과금	미수 부과금	조정부과금/ 환급금	(조정부과/환급) 결정일자	(수급/환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타
대기							
수질							
조정부과/환급 사유: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